	투자일임 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규정		문서번호	규정 001
			페이지	1 / 4
	제정일자		2022.03.29	박옥래

## 투자일임 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규정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(이하 “법”) 제58조에 근거하여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따른 투자일임수수료의 계산 기준 및 징수방법, 일임업무수행에 따른 성과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범위)**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 및 회사의 관련 내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
**제3조 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① “투자일임”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별로 구분하여 금융상품을 취득·처분,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 “기본수수료”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는 일종의 관리수수료를 말한다.
- ③ “성과수수료”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(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)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한다
- ④ “기준지표 등”이라 함은 성과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목표수익률로서,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지표 또는 회사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을 말한다.
- ⑤ “장기우수고객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.
  1. 계약주체로서 3개년간 계약일수가 매년 270일 이상인 자
  2. 계약주체로서 매 연평균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자

**제4조 (수수료 체계)** ①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수수료 지급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1. 기본수수료만 지급 (이하 이 조에서 “기본형”이라 한다)
2.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 (이하 이 조에서 “혼합형”이라 한다)
3. 성과수수료만 지급 (이하 이 조에서 “성과형”이라 한다)

**제5조 (수수료의 부과 기준)**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각 일임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	투자일임 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규정		문서번호	규정 001	
			페이지		2 / 4
	제정일자		2022.03.29	작성자	
			박옥래		

- ② 회사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별지1의 '투자일임 수수료 산정방법'에 의한다.
- ③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- ④ 장기우수고객의 경우 별지1 '투자일임 수수료 산정방법' 4호에 의해 별도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.
- ⑤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산의 규모 및 거래 실적 등에 따라 고객과 협의한 별도의 수수료를 적용 할 수 있다.

**제 6 조 (성과수수료의 수령기준)** 회사는 고객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제 98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99 조의 2 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 투자일임계약시 성과수수료를 적용하기로 약정할 경우에는 고객은 성과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투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, 기준수익률 및 성과수수료율을 사전에 약정하여 계약서류에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법 제 98 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99 조의 2 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.


1.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
2.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 - 가) 성과수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등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
  - 나) 운용성고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
  - 다) 운용성고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고가 부(負)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
  - 라) 그 밖에 성과수수료의 산정방식,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

**제7조 (중도해지 수수료)** ① 투자자가 투자일임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중도해지 수수료는 별지1의 '투자일임 수수료 산정방법'과 같다. 단, 성과수수료를 징구 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징구하지 않는다.

- ②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다.

**제8조 (증액 및 감액, 중도해지 등)** ①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금액에 계약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.

- ② 투자일임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또는 순자산총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.

	투자일임 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규정		문서번호	규정 001		
			페이지	3 / 4		
	제정일자		2022.03.29		작성자	
					박옥래	

③ 계약의 중도해지시 해당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미경과운용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반환한다.

④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금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, 수수료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감액금액에 계약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.

**제9조 (수수료의 납입 및 계산기간 등)** ① 투자일임수수료의 계산기간은 1년으로 한다.

② 투자일임기본수수료는 선취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수수료 납입 및 환불수수료 지급은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한다. 이때 해당 수수료 계산금액이 10,000원 미만 단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.

④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CMS 출금 이체를 통해 투자일임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다.

**제10조 (설명 의무)** 회사는 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”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**제11조 (수수료의 고지)** 회사는 법 제9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 보고서에 수수료의 부과시기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
**제12조 (투자광고)** 회사의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” 제2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, 이 규정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13조 (공시)** 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의거 이 규정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제3항에 의거 이 규정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4조 (규정의 개폐)** 이 규정의 개폐는 대표이사의 승인에 의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

	투자일임 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규정		문서번호	규정 001
			페이지	4 / 4
	제정일자	2022.03.29	작성자	
			박옥래	

## 투자일임 수수료 산정방법

당사의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한 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
투자일임수수료의 계산기간은 1년으로 하며, 기본수수료는 선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
### 1. 기본수수료

구분	산정방법
신규계약	계약자산 X 기본수수료율
중도해지	해지자산 X 기본수수료율 X (잔존일수/365)
자산증액	증액자산 X 기본수수료율 X (잔존일수/365)

\* 해지의 경우 해지자산은 수익증권좌수로 계산한 금액

### 2. 성과수수료

구분	산정방법
계약만료	계약자산 X (기준지표 초과수익률) X 성과수수료율
중도해지	해지자산 X (기준지표 초과수익률) X 성과수수료율 X (경과일수/365)
자산증액	증액자산 X (기준지표 초과수익률) X 성과수수료율 X (증액자산 경과일수/365)

\* 해지의 경우 해지자산은 수익증권좌수로 계산한 금액

\* 계약의 해지 또는 자산증액시 성과수수료는 해지시점의 연환산 수익률로 한다.

### 3. 중도해지수수료

구분	산정방법
계약 후 7일 이내	해당사항 없음
" 3개월 이내	투자수익의 50%
" 6개월 이내	연 환산 8% 초과수익의 50%
" 9개월 이내	" " 30%
" 12개월 이내	" " 20%

\* 성과수수료를 징구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징구하지 않음.

### 4. 장기우수고객 수수료

구분	산정방법
장기우수고객	기준이 되는 수수료에서 협의 조정